

양곡가공업(도정업용)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14일		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			
	주소	전화번호				
업체	업체명					
	소재지					
	영업의 종류					
가공능력 (M/T) (1일 8시간기준)	구분	정미	정맥	밀쌀	압맥	할맥
	가공능력					

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(「양곡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근거법령

- 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 (양곡가공업의 신고)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유의사항

- 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양곡관리법」 제34조제2호).

처리절차

